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2.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을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 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며, 법무부와 소속기관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2. 6. 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법무부 소속기관 주소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0호 중 “사후지도”를 “사회정착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8항제12호 중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을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5호 중 “영치금품관리제도”를 “보관금품관리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3호 중 “내 발생범죄에 대한”을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제11호 중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을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3.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관리 및 분석

제11조제1항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0호 중 “영치금품”을 “보관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 중 “교화활동지도위원”을 “교정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13호 중 “수용자”를 각각 “수형자”로 한다.

제16조제8항제3호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수용자”를 “수형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2호 중 “영치금품”을 “보관금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변금품”을 “자비구매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제1호 중 “자질검사”를 “분류검사”로 한다.

제20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취업 알선 및 취업지원협의회 운영”을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 및 취업 알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후 지도”를 “사회정착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취업 알선 및 취업지원협의회 운영”을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 및 취업 알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후지도”를 “사회정착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가퇴원”을 “임시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처우심사위원회”를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급식관리위원회 운영·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급식관리위원회 운영·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7조제4항 본문 중 “과장, 전자비자센터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 및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 및 이민특수조사대장”을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제12호 중 “영치품”을 “보관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비자센터장”을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3의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춘천보호관찰소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대구보호관찰소 관할구역란 중 “수성구”를 “수성구·군위군”으로 하며, 같은란 중 “청도군·군위군”을 “청도군”으로 하고, 전주보호관찰소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란 중 “전자비자센터장”을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하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각각 하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하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각각 하며,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각각 하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각각 한다.

별표 4의2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란 중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86”을 “7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42”로 하며, 교정관 “21”을 “20”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31”을 “30”으로 하며, 보호주사 “11”을 “12”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6”을 “25”로 하며, 전산주사 “13”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을 “10”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4”를 “2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6”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 4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를 신설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5”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86”을 “7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42”로 하며, 교정관 “25”를 “24”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33”을 “32”로 하며, 전산사무관 “10”을 “9”로 하고, 보호주사 “11”을 “1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6”을 “25”로 하고, 전산주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을 “10”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11”을 “12”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4”를 “2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6”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 4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를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38”을 “135”로 하고, 일반직 계 “119”를 “116”으로 하며, 검찰사무관(교수) “7”을 “5”로 하고, “운전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72”를 각각 “16,638”로 하고, 의무사무관 “24”를 “23”으로 하며, 교감 “1,443”을 “1,437”로 하고, 교위 “1,820”을 “1,813”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58”을 “59”로 하고, 교사 “5,636”을 “5,628”로 하며, 공업서기 “68”을 “69”로 하고, 교도 “6,121”을 “6,110”으로 하며, 전기운영주사보 “2”를 “1”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6”을 “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672”를 각각 “16,638”로 하고, 의무사무관 “24”를 “23”으로 하며, 교감 “1,432”를 “1,426”으로, 교위 “1,820”을 “1,813”으로, 공업주사보 “58”을 “59”로, 교사 “5,636”을 “5,628”로, 공업서기 “68”을 “69”로, 교도 “6,121”을 “6,110”으로, 전기운영주사보 “2”를

“1”로, 기계운영서기 “6”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6”을 각각 “464”로 하고, 보호주사 “4”를
“3”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84”를 각각 “974”로 하고, 보호주사 “106”을
“105”로 하며, 보호주사보 “191”을 “188”로 하고, 보호서기 “193”을 “191”로
하며, 보호서기보 “172”를 “169”로 하고, 방호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37”를 각각 “2,041”로 하고, 보호사무관
“185”를 “184”로 하며, 보호주사 “343”을 “345”로, 보호주사보 “477”을 “478”로,
보호서기 “484”를 “486”으로, 보호서기보 “413”을 “417”로, 운전서기보
“59”를 “56”으로, 방호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82”를 각각 “2,632”로 하고,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6”을 “9”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 “105”를 “102”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 “437”을 “446”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692”를
“707”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 “690”을 “704”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513”을 “526”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82”를 각각 “2,632”로 하고,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6”을 “9”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 “116”을 “1
13”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 “426”을 “435”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692”를 “707”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 “690”을 “704”로 하며, 출입국관리
서기보 “513”을 “526”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평가기간란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 평가대상 정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난민심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9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3명 (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6급 10명, 7급 1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업무	정원	평가기간
	8급 16명, 9급 9명)	
13)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4명 (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6)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9)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5명 (6급10, 7급16, 8급16, 9 급13)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특별점검팀”을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 별표 2의3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란, 별표 3 전주보호관찰소 위치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위치란, 별표 4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5의2의 정원 2명(출입국 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⑦ (생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 이송·퇴원·취업알선· <u>사후</u> <u>지도</u>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 항	10. ----- ----- <u>사회</u> <u>정착지원</u> ----- --
11. ~ 13. (생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8조(교정본부) ① ~ ⑦ (생 략)	제8조(교정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u> <u>날</u> 계획수립 및 시행	12. <u>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u>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⑨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용자의 <u>영치금품관리제도</u>	5. ----- <u>보관금품관리제도</u> ---

에 관한 사항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교정시설 내 발생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u>	3. ----- <u>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u> ----- --
4. <u>광역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팀에 대한 지원·감독</u>	4. <u>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u>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전자비자센터</u>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 <u>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u> -----
⑨ ~ ⑮ (생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
1. <u>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u>	1. <u>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u>

2. 외국인 <u>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운영</u>	2. ---- <u>행정정보 종합플랫폼</u> - -----
3.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 <u>생성 및 관리</u>	3.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u>빅데이터 생성·관리 및 분석</u>
4. 그 밖에 외국인 신원정보 표 <u>준화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u> <u>사항</u>	<삭 제>
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 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교수 <u>7명</u> 을 둔다.	제11조(기획부) ① ----- ----- ----- ----- ----- ----- <u>9명</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교정청) ① ~ ③ (생 략)	제15조(지방교정청)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수용자의 <u>영치금품</u> 에 관한 사항	10. ----- <u>보관금품</u> ----- --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교화활동지도위원</u> 의 추천	2. <u>교정위원</u> -----
3. 수용자의 <u>서신</u> 및 도서관리 에 관한 사항	3. ----- <u>편지</u> ----- -----
4. <u>수용자</u> 의 귀휴 및 사회견학 에 관한 사항	4. <u>수형자</u> ----- -----
5. <u>수용자</u> 의 학력인정시험·기 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5. <u>수형자</u> ----- -----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u>수용자</u> 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3. <u>수형자</u> ----- --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⑦ (생 략)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⑧-----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고·수용·석방· <u>영치</u> ·차 입·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 납	3. ----- <u>보관</u> ----- ----- --
3의2. · 4. (생 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⑩-----

분장한다.

1. (생략)

2. 수용자의 직업훈련

3. · 4. (생략)

⑪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교육 · 교화 · 생활 지도 및 서신

2. (생략)

⑫ ~ ⑭ (생략)

⑮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영치금품의 보관 및 출납

3. 자변금품

⑯ (생략)

⑰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 · 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자질검사

2. ~ 5. (생략)

⑱ ~ ㉑ (생략)

제20조(소년원) ① ~ ④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수형자-----

3. · 4. (현행과 같음)

⑪-----
-----.

1. -----
----- 편지

2. (현행과 같음)

⑫ ~ ⑭ (현행과 같음)

⑮-----
----.

1. (현행과 같음)

2. 보관금품-----

3. 자비구매물품

⑯ (현행과 같음)

⑰-----
-----.

----.

1. ----- 분류검사

2. ~ 5. (현행과 같음)

⑱ ~ ㉑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 · 영
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
원회의 운영

4. (생 략)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보호소년의 감호 · 포상 · 징
계 · 면회 · 서신 · 외출

5. (생 략)

6.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취업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퇴원자의 출석 · 방문 · 통신
지도 등 사후지도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보호소년의 감호 · 포상 · 징
계 · 면회 · 서신 및 외출

6. (생 략)

7.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취업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 · 급
식관리위원회 운영 · 금품의
보관 및 반환

4. (현행과 같음)

⑥-----
-----.

1. ~ 3. (현행과 같음)

4. -----
-----편지-----

5. (현행과 같음)

6. -----
-----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 및 취업 알선-----

7. -----
----- 사회정착지원

⑦ -----
-----.

1. ~ 4. (현행과 같음)

5. -----
-----편지-----

6. (현행과 같음)

7. -----
----- 소년보호위원 활동

<u>지원협의회 운영</u>에 관한 사항 8. 퇴원자의 출석·방문·통신 지도 등 <u>사후지도</u>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생략) 2. 보호소년등의 분류·수용·처우심사·퇴원 및 <u>가퇴원</u>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퇴원·분류심사·면회·<u>서신</u> 및 생활지도 4. <u>처우심사위원회</u>의 운영 및 수용통계 5. 삭제 6.·7. (생략) 8. <u>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u> 9. ~ 11. (생략) ⑨·⑩ (생략)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 ~ ④ (생략)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u>지원 및 취업 알선</u>----- 8. ----- ----- <u>사회정착지원</u> ⑧----- -----. -----. 1. (현행과 같음) 2. ----- ----- <u>임시퇴원</u> - -- 3. ----- -----<u>편지</u> ----- -- 4. <u>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u> ----- 6.·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11.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	--

3. <u>위탁소년에 대한 급여·영치 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 회의 운영</u> 4. (생략)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분류심사위원회 운영</u>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2. (생략) 3. <u>위탁소년의 면회·서신</u> 기타 처우 ⑧·⑨ (생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③ (생략) ④ 각 <u>과장, 전자비자센터장</u>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출입국 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u>서울 및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의 관리과장</u> 및 이민 <u>특수조사대장</u>은 서기관 또는 출 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 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출 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	3. <u>위탁소년에 대한 급여·급식 관리위원회 운영·금품의 보 관 및 반환</u> 4. (현행과 같음) ⑥-----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⑦----- ---. 1.·2. (현행과 같음) 3. -----<u>편지</u> ---- -- ⑧·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과장</u> ----- ----- -----. ----- <u>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 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u> 및 <u>온 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u>--- ----- ----- -----
---	--

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⑤ ~ ⑭ (생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u>열</u> <u>치품</u> 보관	12. ----- <u>보</u> <u>관금품</u>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⑯ ~ ㉓ (생략)	⑯ ~ ㉓ (현행과 같음)
㉔ <u>전자비자센터</u>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㉔ <u>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u> <u>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㉕·㉖ (생략)	㉕·㉖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786</u>		<u>780</u>	-6	
일반직	.	계	.		.		
	.		.		.		
	.		.		.		
	.		<u>748</u>		<u>742</u>	-6	
교정관	.		.		.		
	.		.		.		
	.		<u>21</u>		<u>20</u>	-1	
출입국관리사무관	.		.		.		
	.		.		.		
보호주사	.		<u>11</u>		<u>12</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		<u>26</u>		<u>25</u>	-1	
	.		.		.		
	.		.		.		

전산주사	<u>13</u>	<u>12</u>	-1
·	·	·	
·	·	·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u>11</u>	<u>10</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24</u>	<u>23</u>	-1
·	·	·	
·	·	·	
행정서기보	<u>6</u>	<u>4</u>	-2
<u>행정서기보 또는 교도</u>	<u><신 설></u>	<u>2</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6</u>	<u>25</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786</u>		<u>780</u>	-6	
일반직 계	.		.		.		
	.		.		.		
			<u>748</u>		<u>742</u>	-6	
교정관	.		.		.		
	.		.		.		
			<u>25</u>		<u>24</u>	-1	
출입국관리사무관	.		.		.		
	.		.		.		
			<u>33</u>		<u>32</u>	-1	
전산사무관	.		.		.		
	.		.		.		
			<u>10</u>		<u>9</u>	-1	
보호주사	.		.		.		
	.		.		.		
			<u>11</u>		<u>12</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u>26</u>	<u>25</u>	-1
·	·	·	
·	·	·	
전산주사	<u>13</u>	<u>12</u>	-1
·	·	·	
·	·	·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u>11</u>	<u>10</u>	-1
·	·	·	
·	·	·	
전산주사보	<u>11</u>	<u>12</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24</u>	<u>23</u>	-1
·	·	·	
·	·	·	
행정서기보	<u>6</u>	<u>4</u>	-2
<u>행정서기보 또는 교도</u>	<u><신 설></u>	<u>2</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6</u>	<u>25</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38	135	-3
일반직 계	119	116	-3
·	·	·	
·	·	·	
검찰사무관(교수)	7	5	-2
·	·	·	
·	·	·	
운전서기	1	<삭 제>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672	16,638	-34
일반직 계	16,672	16,638	-34
의무사무관	24	23	-1
교감	1,443	1,437	-6
교위	1,820	1,813	-7
공업주사보	58	59	+1
교사	5,636	5,628	-8
공업서기	68	69	+1

교도	<u>6,121</u>	<u>6,110</u>	-11
•	•	•	
•	•	•	
전기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6</u>	<u>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672</u>	• <u>16,638</u>	-34
일반직 계	<u>16,672</u>	<u>16,638</u>	-34
•	•	•	
•	•	•	
의무사무관	<u>24</u>	<u>23</u>	-1
•	•	•	
•	•	•	
교감	<u>1,432</u>	<u>1,426</u>	-6
•	•	•	
•	•	•	
교위	<u>1,820</u>	<u>1,813</u>	-7
공업주사보	<u>58</u>	<u>59</u>	+1
•	•	•	
•	•	•	
교사	<u>5,636</u>	<u>5,628</u>	-8
공업서기	<u>68</u>	<u>69</u>	+1
•	•	•	
•	•	•	
교도	<u>6,121</u>	<u>6,110</u>	-11

•	•	•	
•	•	•	
전기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6</u>	<u>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466</u>		<u>464</u>	-2	
일반직	계		<u>466</u>		<u>464</u>	-2	
	.		.		.		
	.		.		.		
보호주사			<u>4</u>		<u>3</u>	-1	
	.		.		.		
	.		.		.		
방호서기보			<u>12</u>		<u>11</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984</u>	<u>974</u>	-10
일반직 계	<u>984</u>	<u>974</u>	-10
•	•	•	
•	•	•	
보호주사	<u>106</u>	<u>105</u>	-1
•	•	•	
•	•	•	
보호주사보	<u>191</u>	<u>188</u>	-3
•	•	•	
•	•	•	
보호서기	<u>193</u>	<u>191</u>	-2
•	•	•	
•	•	•	
보호서기보	<u>172</u>	<u>169</u>	-3
•	•	•	
•	•	•	
방호서기보	<u>19</u>	<u>18</u>	-1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037	2,041	+4
일반직 계	2,037	2,041	+4
보호사무관	185	184	-1
보호주사	343	345	+2
보호주사보	477	478	+1
보호서기	484	486	+2
보호서기보	413	417	+4
운전서기보	59	56	-3

방호서기보	<u>15</u>	<u>14</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82	2,632	+50
일반직 계	2,582	2,632	+50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6	9	+3
출입국관리사무관	105	102	-3
출입국관리주사	437	446	+9
출입국관리주사보	692	707	+15
출입국관리서기	690	704	+14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13</u>	<u>526</u>	+1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1</u>	<u>10</u>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 · 외국인청,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582</u>		<u>2,632</u>	+50	
일반직	계		<u>2,582</u>		<u>2,632</u>	+50	
	.		.		.		
	.		.		.		
서기관 또는			<u>6</u>		<u>9</u>	+3	
출입국관리사무관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16</u>		<u>113</u>	-3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26</u>		<u>435</u>	+9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692</u>		<u>707</u>	+15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690</u>	<u>704</u>	+14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13</u>	<u>526</u>	+1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1</u>	<u>10</u>	-1